

대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7다225411 판결 [입회보증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7다225411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7. 4. 5 선고 2016나2012821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1. A

2. B

피고, 피상고인 1. 사단법인 H

2. 주식회사 I

판결 선고 2018. 11. 29.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. 4. 5. 선고 2016나2012821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피고 사단법인 H가 주식회사 J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, 원고들에게 골프연습장 회원 입회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, 그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, 피고 주식회사 I 역시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의 판단기준, 같은 조 제2항의 필수시설 인수, 계약의 해석, 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김재형

대법관조희대

대법관민유숙

주심대법관이동원